



제433회 국회(임시회)
제1차 행정안전위원회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어린이 통학버스 운영 비용 지원〉

■ 민형배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15806호)

2026. 3.

행 정 안 전 위 원 회

전 문 위 원 나 아 정

목 차

I . 제안경위	1
II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 검토의견	3

I. 제안경위

1. 제 안 자 : 민형배의원 등 12인
2. 제안연월일 : 2025. 12. 31.
3. 회부연월일 : 2026. 01. 02.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영세 어린이통학버스 운영자의 보호자 동승의무 이행에 소요되는 비용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보조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합니다.

현재 어린이통학버스 운영자는 어린이가 탑승하는 경우 보호자를 함께 태워 운행해야 합니다. 그러나 소규모로 차량을 운영하는 영세 어린이통학버스 운영자의 경우, 보호자 인건비를 자체적으로 부담하는데 현실적인 어려움이 큼니다.

이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승차정원 15인승 이하 차량을 운영하는 영세 어린이통학버스 운영자를 대상으로, 보호자 동승의무 이행에 필요한 비용을 보조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합니다. 영세 운영자의 의무 이행을 실질적으로 뒷받침하고, 어린이통학버스 이용 아동의 안전을 보다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한 조치입니다(안 제53조제8항 및 제9

항 신설).

Ⅲ. 검토의견

개정안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영세한 어린이통학버스의 운영자에 대하여 어린이통학버스의 보호자 동승의무 관련 비용을 보조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53조제8항 및 제9항 신설).

현행	개정안
제53조(어린이통학버스 운전자 및 운영자 등의 의무) ① ~ ⑦ (생략) <u><신설></u>	제53조(어린이통학버스 운전자 및 운영자 등의 의무) ① ~ ⑦ (현행과 같음) <u>⑧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어린이 교통안전의 원활한 확보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승차정원 15인승 이하 차량을 운영하는 영세 어린이통학버스 운영자에게 제3항에 따른 보호자 동승의무 이행에 소요되는 비용을 보조할 수 있다.</u> <u>⑨ 제8항에 따른 비용보조 방법 및 절차, 영세 어린이통학버스 운영자의 기준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u>
<u><신설></u>	

현행법상 어린이통학버스 운영자는 어린이가 탑승하는 경우 보호자를 동승시켜 운행하여야 하나, 소규모로 차량을 운영하는 영세 어린이

통학버스 운영자의 경우 보호자 인건비를 자체적으로 부담하기 어려운 현실이 있음. 이러한 점을 고려할 때, 어린이통학버스의 보호자 동승에 필요한 비용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할 수 있도록 하려는 동 개정안의 입법 취지는 일정 부분 타당한 측면이 있음.

다만, 동 개정안과 관련하여서는 다음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음.

어린이통학버스의 보호자 동승에 대한 비용 지원 대상은 대부분 학원 등 영리목적의 민간업체에 해당하는데, 어린이통학버스 관련 법적 규제의 수범자에 대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예산을 지원할 때에는 그 필요성을 신중히 검토할 필요가 있음.

일례로 어린이 교육시설 내 비상재해대비시설 등 다른 시설·안전 규제¹⁾에는 비용지원 규정이 없는 경우가 많은데, 어린이 통학버스의 보호자 동승 의무에만 비용을 지원하는 것은 우선 순위 측면의 검토가 선행되어야 할 것으로 보임.

또한, 개정안에 따라 어린이통학버스 운영 비용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보조하게 될 경우 상당한 재정 소요가 예상²⁾되는바, 재원

1) 「영유아보육법」 15조의3(비상재해대비시설) ① 어린이집을 설치·운영하는 자는 반드시 1층과 2층 이상 등 종류별 비상재해대비시설을 설치하여야 하며 설치에 관한 기준은 교육부령으로 정한다.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8조(시설기준) 학원에는 교습과정별로 시·도의 조례로 정하는 단위시설별 기준에 따라 교습과 학습에 필요한 시설과 설비를 갖추고 유지하여야 한다.

2) 경찰청 예산소요 추계치

조달 가능성 및 지속성에 대하여 재정당국과의 충분한 협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임.

동 개정안에 대해 경찰청은 개정안의 취지에는 공감하나 과도한 재정 부담이 우려되며, 개정안이 도입되더라도 어린이통학버스에 관한 사무는 현행 「경찰법」상 지역 내 교통활동에 관한 사무로서 자치경찰사무에 해당하므로 지원주체에서 국가를 삭제³⁾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임.

문 의 처

02)6788-5344

※ 예상 소요 : 어린이통학버스 동승 보호자를 하루 4시간(등하원 시) 주5일 근무 전제하에, '26년 최저
시급(10,320원) 기준 버스 1대당 약 월 108만원
('26년 최저시급 x 하루 근무시간 x 월 평균 근무일수) + (주휴수당 x 월 평균 근무 주週)
(10,320 x 4 x 21.73) + (10,320 x 4 x 4.35) = 1076,582원 (1의자리 이하 버림)

3) 이 경우 시행을 위한 구체적 사항을 대통령령이 아닌 지자체 상황에 맞게 조례로 정하도록 함이 타당하다는 것이 경찰청의 입장임.